



2017년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사업 나는 가장이다

대출내용

- 대출금액: 1세대당 최대 5백만원(단, 신용회복중인 세대(성실상환)는 최대 3백만원)
- 대출금리: 무이자
- 대출용도: 임차보증금
- 대출조건: 일정 기한 내에 신규 또는 재계약 하여야 함
※ 신규 또는 재계약하여 **상환 조정된 임차보증금 차액만큼 대출 가능**

신규 또는 재계약 기한	1차	2017. 1. 1. ~ 6. 30.	잔금지급일은 2017. 1. 1. ~ 7. 31.
	2차	2017. 4. 1. ~ 9. 29.	잔금지급일은 2017. 4. 1. ~ 10. 31.
	3차	2017. 7. 1. ~ 12. 29.	잔금지급일은 2017. 7. 1. ~ 2018. 1. 31.

- 상환방법 및 금액: 거치기간 없이 대출받은 다음 달부터 가장 60개월 분할 상환

- ▶ 300만원 이하 대출: 매월 5만원 분할상환
- ▶ 300만원 초과 ~ 350만원 이하 대출: 매월 6만원 분할상환
- ▶ 350만원 초과 ~ 400만원 이하 대출: 매월 7만원 분할상환
- ▶ 400만원 초과 ~ 450만원 이하 대출: 매월 8만원 분할상환
- ▶ 450만원 초과 ~ 500만원 이하 대출: 매월 9만원 분할상환

- 심사를 통해 선정되며, 탈락자가 발생할 수 있음

신청대상

-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한부모가족(조손가족 포함)의 가장
 - 1) 만 18세(취학 시 만 22세) 이하 자녀를 둔 기준중위소득 72% 이하
 - 2) 임차보증금 보유기준:
 - 대도시(특별시, 광역시의 "구", 도농복합 "군") 5,400만원 이하
 - 중소도시(도의 "시"와 특별자치시·도) 3,400만원 이하
 - 농어촌(도의 "군") 2,900만원 이하

〈2017 기준 중위소득 72%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〉 (단위: 원)				
가구원 수	소득기준	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(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)		
		직장가입자	지역가입자	혼 합
2인	2,026,000	62,599	45,657	63,330
3인	2,621,000	80,756	80,407	81,698
4인	3,217,000	99,426	107,314	100,677

※ 가구원수: 주민등록등본에 등록된 세대원수
만 18세 이하: 1999.1.1. 이후 출생자(취학시: 1995.1.1. 이후 출생자)

대출 불가 세대

- 아래 내용 중 1가지라도 포함될 경우 대출 불가
- 대출불가세대가 대출받은 사실이 발견될 시 즉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며, 향후 재단에서 시행하는 지원 사업에서 제한받을 수 있음
 - ▶ 세대주 및 세대원 중 부동산 소유자
 - ▶ 민간단체로부터 이미 임차자금을 무상 지원 받은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
 - ▶ 청소년한부모 중 미성년자(민법상 대출 불가)
 - ▶ 가족(직계비속, 형제자매)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
 - ▶ 6개월 미만의 단기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
 - ▶ 신용관리 대상자(개인회생, 파산)

- ※ 단, 신용회복중인 세대는 상기 공통기준과 아래의 두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, 별도 심사를 통해 대출 가능
 - ① 신용회복위원회(타기관 채무조정 이용자 제외)를 통해서 채무조정을 받아 24개월 이상(개인별 신청일자 기준) 성실상환중인 세대
 - ②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신청 전 총 부채가 3천만원 이하인 자

사업일정

구 분	2017년 일정		
	1차	2차	3차
신청서류 접수	4월 3일(월) ~ 4월 21일(금)	6월 26일(월) ~ 7월 14일(금)	9월 18일(월) ~ 10월 13일(금)
최종심사대상자 발표	5월 19일(금)	8월 11일(금)	11월 10일(금)
약정서류 접수	일정 및 내용은 최종심사대상자 발표시 홈페이지 및 신청기관을 통해 공지 예정 (※ 최종심사대상자로 선정 후, 대출약정서류를 제출해야 대출 진행이 가능함)		
대출금 입금	6월중	9월중	12월중

※ 세부 사업 일정은 내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.(변경될 시 홈페이지에 공지)

접수 방법 및 제출서류

- **접수방법:** 지자체 또는 복지기관 및 단체를 통해 신청 - 신청서 및 구비서류(원본) 일체를 첨부하여 우편 제출
- **접 수 처:** (08302)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72, 2층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
- **제출서류**

구 분	구비서류		비 고
필수 서류	신청 기관	• 서식1. 신청기관 총괄표	홈페이지 다운로드
		• 서식2. 신청기관 신청서	
		• 서식4. 사실확인서(필요시)	
	신청자	• 서식3. 대상자 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	홈페이지 다운로드
		• 서식5. 상환계획서	주민센터, 인터넷
• 주민등록등본,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			
• 현재 거주지 임차계약서 사본 1부 - 시설거주자: 시설입소확인서로 대체 - 무상거주: 서식4. 사실확인서 및 주민등록초본 - 신규 또는 재계약을 완료한 상태에서 신청시: 신·구 계약서 사본 각 1부			
소득증빙서류 (해당분야 서류 제출)	기준중위소득 50%이하	• 수급자 증명서, 한부모가족 증명서 각1부	주민센터, 인터넷
	기준중위소득 50%초과 ~ 52%이하	•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	
	기준중위소득 52%초과 ~ 72%이하	• 건강·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(2017년)	국민건강보험공단
해당자 한함	★가점 부여	• 청약저축 확인서(신청자 본인 명의) 1부	거래은행
		• 장애인증명서 (가구원 전체/1~3급) 1부	주민센터, 인터넷
	신용회복 대상자	•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, 신용회복지원 승인 통보서 각 1부	신용회복위원회

※ 신청 서식은 본 센터 홈페이지(www.seoulhanbumo.or.kr)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함

유의사항:

-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대출 신청 접수가 되지 않으며,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
- 접수일자 마감일 등기우편 소인 유효(접수기간 외 제출된 서류는 인정되지 않음)

문의

-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주거지원사업팀 T. 070-7475-3018
(문의가 많아 통화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 안내문을 먼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)

